

## 임실군 의회 공고 2026 - 4호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임실군의회 의장



###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각종 사고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및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지원대상 및 범위,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mailto:charity81@korea.kr)

### 4. 제정안: 붙임

#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및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안전관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그밖에 군수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환경 지원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3. 주요 사업 추진계획
4.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안전취약계층 및 이용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기·가스·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정비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
4.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5. 반 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6.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7.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8. 그밖에 군수가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의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위탁 업무 전반과 운영비 집행 현황 등을 정기 또는 수

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게 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임실군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